

공 고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-30호 관악효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(청룡동) 1535-10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

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27일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관악효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35-10 / 3,153.3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시행자명	대표자	주소
관악효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외 1(서울주택도시공사)	이복수	서울시 관악구 장군봉13길14

4. 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0.02.24.
6.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대지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연면적(㎡)	높이(m)	건축물의 주용도	층 수
3,153.3	42.33	199.84	9,202.7655	21.9	공동주택	지하2층/지상7층

7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공급구분	주택형태	동수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)		
				46㎡	63㎡	79㎡
분 양	아파트	2	82	26	42	14

8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)		
		46㎡	63㎡	79㎡
계	82	26	42	14
토지등소유자	48	1	33	14
일반분양	34	25	9	0
보류시설	-	-	-	-

9.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10. 의제사항 :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 제1호, 제3호, 제10호, 제12호
11. 기타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주택과(☎ 02-879-6322)에 비치 보관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-31호 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,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27일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관악구 신림동 646-464	관악구 난곡로30길 52	2010-06-03	난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30번도로	난곡동
관악구 봉천동 1544-1번지 일원 (봉천제12-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)	관악구 참숯1길 7	1999-12-10	참숯길에서 분기되는 1번도로	보육시설
	관악구 참숯1길 33	1999-12-10	참숯길에서 분기되는 1번도로	치안센터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자	폐지 사유	비고
관악구 신림로31길 9-5	2020년 2월 17일	건물철거	서림동
관악구 난곡로30길 50	2020년 2월 19일	건물철거	난곡동
관악구 관악로10길 69-3	2020년 2월 24일	건물철거	낙성대동
관악구 관악로10길 69-4	2020년 2월 24일	건물철거	낙성대동
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57-8	2020년 2월 24일	건물철거	낙성대동
관악구 관악로14나길 29	2020년 2월 24일	건물철거	낙성대동
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57-9	2020년 2월 24일	건물철거	낙성대동
관악구 낙성대로4길 29	2020년 2월 24일	건물철거	낙성대동
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39-5	2020년 2월 24일	건물철거	낙성대동
관악구 관악로14나길 13	2020년 2월 24일	건물철거	낙성대동
관악구 봉천로58길 9	2020년 2월 24일	건물철거	낙성대동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(☎02-879-6635)에 문의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.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

하면 고시 후 도로명주소로 사용가능합니다.
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